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2024년 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헬기조종	 조종 경위 10		정년 적용	지방청 항공단(대)

2 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헬기조종	경위	o 해양경찰청 보유 헬리콥터의 조종 운영 - 해상순찰,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5조(시험의 방법),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등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예정일('24. 4. 25.) 기준「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3세 이상 45세 이하('78. 1. 1 ~ '01. 12. 31.)
 -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관련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병역법」、「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복무 중인 사람(현역) 중「임용유예」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는 교육원 입교예정일('24.6.1.) 전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하며, 전역불가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색 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함.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함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145 ~ 90mmHg 범위에 있어야 함)
문 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4,25,)]

• 경력계산,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110 1101	직위별 요건					
채용분야	※ 다	음 필수	자격요건(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자	격증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			
헬기조종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1,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500시간 이상 및 기장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을			
	응시		보유한 사람			
	요건	경력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기능실기)

(참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8조, 제32조·제33조)

채용분야	직급	평가방법	시 험 과 목
헬기조종	경위	기능실기	○ 운항조종능력(모의조종) ○ 항공실무지식(구술)

[○] 합격자 결정: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200%(2배수) 선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나. 2차 시험(적성·신체)

(참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 종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성 검정(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신체검사 〈붙임4 참고〉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 결정
 -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다. 3차 시험(서류전형)

(참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
 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류로 판단 가능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가산점 해당 여부 판단
 - ※ 인정되는 가산점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gosi.kr)에 개인별 공개 후 수정 기간(4.22.~23.)을 거쳐 확정되며, 수정 기간 이후 수정 불가
- 응시자 필수서류(전형별 합격자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4차 시험(면접): 1단계 집단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참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30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을 검정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10점)
- 면접평가(2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이상(1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단계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 처리

마. 시험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기재

구분	적용범위 및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실기시험,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임용예정계급이 경위 이하인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8])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대상 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한 사람만 적용됨(잘못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각 항목(실기시험·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붙임5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3]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
 - ※ 응시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자격증은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격증 중 최종시험예정일 ('24. 4. 25.)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사본 등)만 인정
 - ※ 자격증 발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갱신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인정
 - 기산지격증 중어학능력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4. 4. 25.)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반영비율
헬기조종	실기 75%, 면접 25%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실기 → ③ 면접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 **<붙임6 참고>**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적성·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 2. 19(월) (2.20(화)~29(목))	'24. 3. 11.(월) ~ 3. 12.(화) (3.18.(월))	'24. 3. 20.(수) (신체검사 현장 고지)	'24. 4. 18.(목) (불합격자 개별 통보)	'24. 4. 25.(목)	'24. 5. 10.(금) 17:00경
장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별도 공지	인천	인천	인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등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게재 예정
 -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별도 게재하지 않으며 불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시간: 2024. 2. 20.(화) 10:00 ~ 2. 29.(목) 17: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표는 2024. 3. 4.(월) 17:00부터 출력 가능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 불가
 - ※ 응시수수료(경위 7,000원) 및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발생
 -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시 안내 예정

나.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

• 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 예정

다. 유의사항

- 응시지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기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 요구 可
 - ※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5. 10. ~ 6. 9.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교육 및 임용

- 교육 입교일 : 2024년 6월 1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원 입교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사유에 따라 최종합격 취소 可 (참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임용 예정일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 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9 안내 및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外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9호]에 따른「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5.20.) ~ 일주일 간(5.27.)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시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또는 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gosi.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훈련담당관: 032-835-2436, 2636, 2736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위	10명	헬기조종	지방청 항공단(대)
	○ 체야거차 이트	1에 트이디노 헤미코디	· · · · · · · · · · · · · · · · · · ·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임무에 투입되는 헬리콥터 조종 및 운영
 - 해상순찰,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대형함정 탑재(이·착함),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
- 항공기 운항관리 및 항공안전 관련 업무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용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필요 지식

- 비행 관련 전문지식 및 항공안전 분야 지식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항공기상, 항공교통관제 관련 지식 및 영문 교범 해석 능력
- 해양경찰 임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비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 필수자격요건(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자격증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1,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500시간 이상 및 기장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응시 경력 요건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헬기조종 실기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 경찰공무원(경위) 헬기조종 평가방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1차			▶ 항공 순찰	▶ 기본 비행술 ▶ 야가 함상 이·착함 절차
기능실기	헬기조종	경위	▶ 항공 수색 및 구조 . ᄌ 아가 하사 이 차하	▶계기비행 절차
*구술포함			▶ 주·야간 함상 이·착함	▶ 항공실무능력

헬기조종(경위) 실기시험 평가표

평 가 내 용		비	점 점	기	준	득 점
	0 1 -11 0		양호	보통	불량	= 2
항공기	함정 Hover(5점)	±5´	±10′	±15´	±20′	
함정 이동	* 10ft 유지	5점	4점	3점	2점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Side-Slip(5점)	0	±5°	±10°	±15°	
(10점)	* 함정 좌현이동	5점	4점	3점	2점	
	증속·상승(10점)	±100	±150	±200	±250	
함정	* 침로 30° off, 500fpm 상승	10점	8점	6점	4점	
이함 요령	선회·직진비행(10점)	±5°	±10°	±15°	±20°	
(20점)	* 60kts시 함정침로 선회, 400ft, 100kts시 좌선회	10점	8점	6점	4점	
	증·감속시 고도(5점)	±50'	±100′	±150′	±200′	
기본비행	* 400ft, 100kts 기준	5점	4점	3점	2점	
(15점)	상승·강하(10점)	±100	±200	±300	±400	
	* 500fpm	10점	8점	6점	4점	
±1 =1	강하률(10점)	±50	±100	±150	±200	
함 정 착함 요령	* 1.2nm, 400ft, 60kts 기준, 0.5nm까지 300fpm 접근	10점	8점	6점	4점	
(20점)	동조기동 및	±2.5′	±5′	±10′	±15′	
	함정 착함(10점)	10점	8점	6점	4점	
	속도·Heading유지(10점)	±0°/±100	±5°/±200	±10°/±300	±15°/±400	
계기비행	* 500fpm 상승·강하	10점	8점	6점	4점	
(15점)	고도·속도 유지(5점)	±0′/±5	±50'/±10	±100′/±20	±150′/±30	
	*선회시(15°)	5점	4점	3점	2점	
항공실무능력(20점)		항공성	상식 및 운	항관련 실두	무지식	
S.	영충열구중덕(20점) 		16점	12점	8점	
득 점 계			100) 점		점

신체검사 평가기준 및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 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 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직무 수행에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 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받지 못한 사람
가능한 상태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	청 소속 경 및 작성방법을 읽고 직	할공무	원	채용	신체	검사서		사	진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분야	응시t	번호	성	명		(3	.5cm ×	4.5cm)
				주민등록	번호		*	압인 또	는 계인
		검	사	내	용				
7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선 (색 ^건	<u>닉</u> '낙)			청 력		좌: (우: () dB) dB
종 양 질 환	,			이비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곤	·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	기계질	<u></u>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 선	<u> 검사</u>				
약물(TBPE)검사				기타 특	이사항				
위와 같이 집	검사했습니다.								
						년	<u>.</u>	월	일
			검,	사자(담당:	의사)		(人	네명 또는	-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판 정 보	격 류	합격	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처 사 필요 시유 등	점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누	<u>d</u>						
위와 같이 판정	!했음을 증명합니디	٠.							
						년	<u>.</u>	월	일
			검	진기관의 경	장		(A	네명 또는	: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용시자]

- 1. 용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이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 나. (2)란에는 음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헬기조증, 경장 합정요원, 순경 공채 등)
- 용시자는 굵은 선 만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화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용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겉진기관]

-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암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중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잘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e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산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용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총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점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완정기준' 에 배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합 (예시: '민성골수성백렬병'에 해당하나 글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實業)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
 - 나. 관점보류 사유 기재의 여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메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의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용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메 따라야 합니다.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통신설비・전자기기 기능장전자계산기・전자기사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 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 •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 • 전파전자통신 • 통신선로 • 통신기기 •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 · 2급 - 전산회계운용사 2 · 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 · 산업안전 · 소방설비 · 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로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 (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 - 대한주짓수회 - 대한크라쉬연맹	- 대한검도회 - 대한우슈협회 F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24.1.1. 인정 취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50)	- 대한기도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명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합기도충연맹 - 대한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학기도유술협회 - 대한특공무술연합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한국흥구우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형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대한생활체육복상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세계태권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사)한국권투협회 - (사)한국권투협회 - (사)한국킨복상협회 '23.1.27 - 대한특전무술협회 '23.1.27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23.1.27 - 신대한기도협회 '23.1.27 - 신대한기도협회 '23.1.27 - 신대한기도협회 '23.1.27 - 신대한기도협기도연명 '23.1.27 - 신대한기도협기 '23.1.27 - 신대한기도협기 '23.1.27 - 신대한기도협기 '23.1.27 - 신대한기도협기 '23.1.27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 택견보존회	

※ '23.1.27.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5): 위 표 참고
※ '23.1.27.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4): 위 표 참고
※ '23.12.31.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안정하는 단체(1): 대한크라쉬연맹
※ '24.1.17.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1): (사)대한삼단봉협회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02-394-1331
(A)\\\\\\\\\\\\\\\\\\\\\\\\\\\\\\\\\\\\	055-055-7915	(시)대한 6월세표시조시 한법회	031-943-4447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8.11.10 지정취소	005-221-9000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지정취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지정취소	02-422-6119

-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고객센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

임용유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알림

1

임용유예 신청

- □ **관련 근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8조의2
- □ 임용유예 신청 대상 : 신규채용(공채·경채 무관) 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O (적용 대상) 채용시험 합격 후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어 교육원 입교 예정인 자
 - *「채용후보자등록원서」제출로 등록되며,「채용후보자등록원서」미제출자는 임용포기로 간주
- (신청 방법)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시「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임용유예 신청 서 +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 입교 後에는 신청불가
- □ 임용유예 기간 : <u>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u> 내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으나, 신임교육기간(8개월) 감안, 실질적으로 1년 내외 가능*
 - * 유동적인 입교일정 감안, 신임교육이 연 2회 실시되는 경우 → '당초 입교일 부터 차차기 입교일' 까지, 신임교육이 연 3회인 경우 '당초 입교일부터 차차차기 입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 임용유예 규모 :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범위 내외 가능
 - * 본청 채용자(경정 공채·간부후보생 등)의 경우,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외 가능
- □ 임용유예 사유: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참고사항 > -

구 분	관련 근거	적용 대상	신청 절차	사	유	기 간	비고
임용 유예	「해양경찰 임용규정」 <대통령령>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신청 <신임교육 입교 前>	① 병역복무 ② 학업 ③ 질병	④ 임신·출산⑤ 그 밖에 부득이인정	2년	임용 권자
차기 입교	「해양경찰 교육원 학칙」 <교육원예규>	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학생	교육 중 사유 발생 시 신청 <신임교육 입교 後>	① 질병 ② 천재지변, 교통시고등 ③ 가족사망등	④ 추가합격통보*⑤ 그밖에 정 당한 사유	2년	교육 원장

* 추가합격통보를 받고 입교일로부터 7일 이내 입교 불가 시 차기입교자로 분류될 수 있음

□ 병역복무를 위한 임용유예 : 제1호 및 제5호 적용

○ 제1호〈「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구분	주요 내용
	① 군 未필자(「병역법」 상 병역의 의무복무자)가 ②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상세	이후(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에 ③ 「병역법」상의 의무복무*(대학생 군사훈련
요건	과정을 이수하는 단기 복무장교·부사관 포함)를 시작하는 경우
	*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보충역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ᅔᄀ	산입하지 아니함(「경찰공무원법」제12조 제4항)
효과	* 제대 후에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이 그대로 유효하여, 학업의 계속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 신청 가능

○ 제5호<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주요 내용
	① 병역법상 의무복무자가 병역복무 도중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
A 6 (J)	여,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상세 요건	②「병역법」이 아닌,「군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同 군 복무
표신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 군 장학생 출신의 장교복무, 학사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군 복무
효과	위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 □ 학업의 계속을 위한 임용유예 : 제2호 적용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2년) 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임용유예를 인정할 학업의 진행 정도) 적용

구분	주요 내용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인 자*로 ②그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유예
	를 신청하는 경우
상세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은 임용유예 불가하며, 새롭게 대학·대학원(전문대학원)에
요건	진학하는 경우도 불가,
	** 휴학·어학연수 시 학업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임용유예 해제
	②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당연 허용
승규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
효과	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 □ 장기요양(6개월 이상)이 필요한 질병을 위한 임용유예 : 제3호 적용
 - O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
- □ 임신·출산을 위한 임용유예: 제4호 적용
 - 임신확인서 및 출산(예정)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3 임용유예 심사 기준

- ❖ 임용유예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며,심 사결과는 입교일 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 심사기준(인원조정 기준)
- 본청·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초과하여 임용유예 신청 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유예 허용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 현장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외로 허용 가능

임용유예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임용유예 신청서(서식 1)」와 함께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	내 용	증빙서류
제1호 (또는 제5호)	병역복무 사유 임용유예	 ① <u>입대 전 또는 복무 중</u>에는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 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 ② 전역 후에는 병역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제출
제2호	학업의 계속	① 재학·휴학·재적증명서 등 지금의 학 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② 졸업학점과 현재까지 이수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현재 휴학 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하여 재학증명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함
제3호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다는 진 단서
제4호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등
제5호	기타 그 밖에 부득이 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 **연장**: 임용유예 중인 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임용유예 연장 신청(다른 사유로 추가 신청 포함)
 - 임용유예 연장(다른 사유로 인한 추가 신청 포함)이 가능한 경우
 - ▶ 현재「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기존 6개월 정도 임용유예(학업출산질병등)를 한 자가 다른 사유로 연장 및 추가신청을 원하는 경우(최대 기간인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 고려 필요)
- 임용유예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8조의2 제2호 부터 5호까지에 따라 임용유예를 1년 신청하여 그 기간이 끝나가는 자
 - ▶ 이미 1년 임용유예를 한 경우, 남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 신임교육을 마치고 임용까지 해야 하므로 연장 불가
- □ **철회**: 임용유예 중인 자는 임용유예 사유 소멸 즉시, 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철회 신청서' 제출
 - ▶ 철회 후 차기 신임교육 일정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취소

- O (임용유예 취소) 임용유예 목적 외 사용 적발,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사유를 제외한 범죄 행위 적발, 기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또는 「해양경찰청 임용규정」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 (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위

7 교육 입교 및 대기

- □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임용유예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대상자는 신임교육 입교를 위해 대기
 - ▶ 임용유예가 소멸한 때에 **입교 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경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 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임용유예자는 채용후보자 신분을 가지므로 「경찰공무원법」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 적용

유의사항 및 Q&A

- O.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학업의 계속,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6개월 이상),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와 함께 임용유예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신청의 사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추후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 *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괴할 수 없으며, 신임교육 등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
- Q.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 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을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임교육 일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약 1년 내외의 기간 만큼 임용유예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수해야 할 학기가 남았다면, 임용 후 연수휴직을 통해 학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만,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 지 궁금합니다.
- A. 해양경찰청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인력운용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임용유예 시 불이익이 있나요?
- A. 임용유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초임 발령일이 늦춰지는 만큼 당연히 재직기간을 반영하는 인사(승진, 전보 등)에 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Q.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A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습니다.
- Q.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A.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의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징집·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위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 무경찰), 보충역 등의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을 말합니다.
- Q. ROTC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병역 의무복무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 A.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에는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경찰공무원법」제12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기간은 공무원 채용후보자 명 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Q.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 A. 대학교 재학 중에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되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용유 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 O. 가정 주부입니다.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 할 수 있나요?
- A.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과 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육아를 위해서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임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Q.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 예가 가능하나요?
- A.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 시, 남은 군 복무기간이 5년인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 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군 복무기간이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 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 Q.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에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승인되나, 「병역법」상의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 받으므로 군 복무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용유예 1호 적용(징집·소집) + 임용유예 2호 적용(학업의 계속) ○> 다만,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Q. 한학기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사이버 수업 중입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 A. 학기 재학 중이므로 임용유예 신청 사유는 되나, 학교에 따라 사이버 강의 활용·야간 수업 전환 등 충분히 임용 후에도 학업을 완료 할 수 있을 경우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졸업 시까지 남은 학기가 1학기(6개월)인 경우 임용유예는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까지 가능한가요?
- A.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1학기만 남은 상황에서 그 이상의 기간인 1년을 임용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임용유예가 될 소지가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6개월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 Q.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 연수를 다녀오 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 A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유예 기간은 유예사유(학업의 계속)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방송통신대 재학생의 경우에도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A. 학업의 계속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학교 출석을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 기간 동안 출석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의 계속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어 임용유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Q.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용유예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즉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용유예 신청서			
(□ 신규 / □ 연장)				
■ 시 험 구 분 :				
■ 응시번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번 호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유예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 사유로 위와 같이 임용유예를 신청합니	- 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청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	날인합니다.			

- ※ 증빙 서류는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 유예사유: 학업계속, 군 복무, 질병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8조의2)
- ※ 임용유예는 해양경찰청 인력운영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 20 . . ~ 20 . . (2년)
- □ 각 항목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구분에는 본인의 채용 시험 및 응시 지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 ·예: 20 년 순경 공개경쟁채용 (인천)
 - 주소, 전화번호는 주민 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 신청 기간
 - ·시작시점은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단, 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종료시점에는 실제로 유예사유가 끝나는 날짜를 기재
 -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증빙서류는 임용유예신청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현재 휴학 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군 복무에 따른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를 제출하고, 전역 후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2] 임용유예 철회 신청서		
임용유예 철회 신청서		
■ 주 소:	년 월 일 : -	
	, 휴대전화	
위 본인은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을 받고자 임용유예 철회원을 제출합니다.		
		일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부		
○○○○청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 ※ 증빙서류는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구분에는 본인의 채용 시험 및 응시 지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예 : 20 년 순경 공개경쟁채용 (인천)
 - 주소, 전화번호는 주민 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 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임용유예 철회 신청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 예: 졸업증명서, 군 복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